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6. 27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5년 6월 2일
- 나. 발 의 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
- 라. 상정일자: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 1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노상욱)

- 가. 제안이유
 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(10일→20일, 다태아 출산의 경우 15일→25일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주요 내용으로
 -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이 2024. 10.22.일부개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5.2.11.에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(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)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 시행되었음.
 - 이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롭게 개정된 법 개정 사항을 별표 5에 반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.

○ 검토 결과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별표1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음.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현행 법령 및 복무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및 대응 방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2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6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(10일→20일, 다태아 출산의 경우 15일→25일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5. 5. 1.~5. 21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0

(한 번에 둘 이상의
자녀를 출산한
경우에는 25일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